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학칙 제29조의3에 의거 성인학습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 평생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성인학습지원센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루터대학교 성인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① 센터는 교학처 산하에 둔다.

②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및 담당직원, 행정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성인학습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⑤ 자문위원은 교내·외 교원 및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에서는 성인학습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성인학습 일 학습 병행에 관한 업무 지원, 학업 상담 및 지원
3. 성인학습자 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
4. 성인학습자 교수학습 방법 운영 지원
5. 교육품질 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 교육 환류 지원 지원
6. 성인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이해 제고 및 동참 유도 지원
7. 성인학습 관련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원
8.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제 3 장 성인학습자 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 성인학습자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성인학습자관리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성인학습지원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3. 본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성인학습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심의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한다.

1. 성인학습 관련 규정의 신설,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성인학습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3. 성인학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성인학습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성인학습 지원센터 업무의 성과분석 및 평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시행) 본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성인학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성인학습지원센터는 성인학습자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기중 또는 방학 중 수시로 성인학습자에게 정규교과목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제10조의 교육지원 대상은 성인학습 학사운영 규정에 명시된 제3조 용어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한다.

제12조(면학장려금) 제11조의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면학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관련 규정

성인학습지원센터 규정

이 없을 때에는 성인학습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